

제211회 임시회
2003. 4. 22(화)

審 查 報 告 書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教育社會委員會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3. 31(충청북도지사)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4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2003년 4월 17일(제1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(여성회관장 박정희)

가. 제안이유

- 2003년 1월 1일자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
- 기존의 전통예절실을 폐지하고 이 공간을 여성1366상담실로 대체 운영하고
- 아울러 전통예절실 시설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들 수정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전통예절실 사용료 규정과 수강료·사용료 감면대상 중 여성공익법인을 각각 삭제 함.(안 제4조)
-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·보완 함.(안 제3조)
 - 수강료와 사용료 및 수강·사용료를 수강료·사용료로
 - 수강개시일 또는 사용개시일을 수강·사용개시일로 각각 변경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석규)

-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를 위한 여성1366상담실 설치에 따라 기존의 전통예절실 및 그 시설사용료규정을 폐지 및 삭제하고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 준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.
- 그러나 수강료·사용료 감면대상 중 “여성단체”의 개념 및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감면대상의 선별 기준에 허가권자의 재량성 및 임의성이 부여되어
 - *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(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적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)
 - *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(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적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기타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)
- 향후 여성(계모임, 부녀회, 동창회, 동문회 등) 및 단체 등 시설 사용을 신청할 경우 그 대상·목적 등 그 선별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일정 기준이 필요한 바
 - * “감면기준의 임의성 및 재량성” : 중앙부처, 도 감사 대상
-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- 수강료·사용료 감면대상 중 “여성단체”의 개념 및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감면대상의 선별 기준에 허가권자의 재량성 및 임의성이 부여되어
- 향후 여성(계모임, 부녀회, 동창회, 동문회 등) 및 단체 등이 시설 사용을 신청할 경우 그 대상·목적 등 그 선별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,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안 제4조(제1항 제2호)중 “여성단체”를 “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단체”로 함.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- 신·구조문대비표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2003년 1월 1일자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가 여성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통예절실을 여성'1366'상담실로 활용하며
- 전통예절실 시설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시설사용료중 전통예절실 사용료 규정 삭제
-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
 - 수강료·사용료 감면대상중 여성공익법인을 삭제하고
 - “수강료와 사용료”를 ⇒ “수강료·사용료”로 하며
 - “수강개시일 또는 사용개시일”을 ⇒ “수강·사용개시일”로 함

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수강료와 사용료”를 “수강료·사용료”로 하고, 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“수강·사용료”를 각각 “수강료·사용료”로 하며,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“수강개시일 또는 사용개시일”을 각각 “수강·사용개시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중 “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”를 “여성단체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교육 수강료

(단위:원)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교육수강	1인/1월/1과목	10,000	과정·기별 일괄납부

시설 사용료

(단위:원)

시설물명	기 준	금 액	비 고
대강당	1회/2시간	50,000	냉·난방비 별도
강의실	1회/2시간	20,000	

■ 냉·난방비 기준

- 대강당 : 1회 2시간 기준 30,000원
- 강의실 : 1회 2시간 기준 20,000원

※ 가산금 적용 : 매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% 가산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3조(수강료·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</p> <p>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의 교육수강과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발표의 기준에 의한 <u>수강료와 사용료</u>를 신청서 접수시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 수강자 및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강·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<u>수강·사용료</u>를 납부자에게 반환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수강개시일 또는 사용개시일</u> 전에 수강·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의 <u>수강·사용료</u>는 10%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</p> <p>2. <u>수강개시일 또는 사용개시일</u> 이후에 수강·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의 수강료는 해당월을 공제한 잔여월의 수강료를, 사용료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</p> <p>제4조(수강료·사용료의 감면)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<u>수강료·사용료</u>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2.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</p>	<p>제3조(수강료·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</p> <p>① _____ _____ _____<u>수강료·사용료</u> _____</p> <p>② _____ _____ _____<u>수강료·사용료</u> _____</p> <p>1. <u>수강·사용개시일</u> _____ _____ _____<u>수강료·사용료</u> _____</p> <p>2. <u>수강·사용개시일</u>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</p> <p>제4조(수강료·사용료의 감면) ① _____ _____ _____</p> <p>2. <u>여성단체</u> _____ _____</p>			

현 행				개 정 안			
교육수강료				----- (단위:원)			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	-----	-----	-----	-----
교육수강	1회/1과목	₩10,000원	• 과장·기별 남부	-----	-----	10,000	• 과장·기별
시설사용료				----- (단위:원)			
시설별명	기 준	금 액	비 고	-----	-----	-----	-----
대강당	1회/2시간	₩50,000원	• 냉·난방비 별도	-----	-----	50,000	-----
강의실	1회/2시간	₩20,000원		-----	-----	20,000	-----
전통예절실	1회/2시간	₩20,000원		-----	-----	-----	-----
<p>■ 냉·난방비 기준</p> <p>• 대강당 : 1회2시간 기준 30,000원</p> <p>• 강의실·전통예절실 : 1회2시간 기준 20,000원</p> <p>※ 가산금 적용 : 매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%가산</p>				<p>■ -----</p> <p>• -----</p> <p>• 강의실 -----</p> <p>※ -----</p> <p>-----</p>			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제46조(설치)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,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여성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.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4. 17

제안자 : 이기동의원.

1. 수정이유

- 수강료·사용료 감면대상 중 “여성단체”의 개념 및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, 또한 감면대상의 선별 기준에 허가권자의 재량성 및 임의성이 부여되어
- 향후 여성(계모임, 부녀회, 동창회, 동문회 등) 및 단체 등이 시설 사용을 신청할 경우 그 대상·목적 등 그 선별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,
-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4조(제1항 제2호) 중
 - “여성단체” 를 “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는 여성단체” 로 한다.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4조(제1항 제2호) 중

- “여성단체”를 “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는 여성단체”로 한다.

